

의안번호	2219681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6.9.1.
추 계 번호	26B3265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500만원, 2032년 4,5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 동안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 계	연평균
우리사주제도운영 실태조사 (안 제49조의3)	45	—	—	45	—	90	1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실태조사의 내용·주기·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기본 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2항) 4의2. 제32조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의3.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주 권리 행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의무규정
2	안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 및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은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와 우리사주조합을 각각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제6항)	의무규정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는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제7항) 6. 우리사주조합원총회의 의결권 행사 현황 7.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활동 현황	의무규정
4	안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우리사주조합원은 같은 법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u>100분의 30</u> 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의 법인 외의 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모집 등을 하는 주식 총수의 <u>100분의 30</u> 의 범위에서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원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46조의2(주주권 행사의 보호) 신설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항)	의무규정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	의무규정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행위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49조의3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조사)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은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항목·방법,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99조(과 태료)	제46조의2제4항, 제69조(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용자, <u>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u> , 기금법인 또는 공동기금법인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	• 미대상 –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우리사주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주 권리 행사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안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	• 미대상 – 개정안은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뿐 아니라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1) 제2조(정의)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생략)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3	안 제35조(우리사주조합의 운영 등)	—	• 미대상 –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 대표자 등 임원의 선출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우리사주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의무화하면서 위원의 수는 각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4	안 제38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의 범위)	—	• 미대상 – 개정안은 주식 모집·매출 또는 유상증자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한도를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5	안 제46조의2(주주권행사의 보호) 신설	—	• 미대상 – 개정안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정당한 주주의 권리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신고·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49조의3(우리사주제도운영 실태조사) 신설	○	• 공식추계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7	안 제99조(과태료)	—	• 미대상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이는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1)에 따라 비용추계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미대상 사유에 해당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로 함

- 개정안은 박홍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96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개정안은 우리사주제도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항목·방법,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곤란하므로, 장래에 발생할 실태조사 비용은 유사사례의 평균값을 참고하여 산출함
 - 실태조사 비용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시행주기는 개정안에 따라 2028년을 시작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다만, 개정안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현재 예산 및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유사사례 1)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위한 중소기업 노·사 심층 실태조사

- 조사개요: "사외적립 의무화의 단계적 시행"의 이행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 대상자인 노사 양측의 의견을 종합한 정밀 분석
-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 소요재정: 2026년 기준 35백만원(2026년 현재 공고 중)²⁾

#. (유사사례 2) 적립형공제 직접가입제도 도입 전략 및 사업성 분석

- 조사개요: 적립형공제급여 가입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직접가입제도 도입 기반 마련, 제도 개선 관련 정책 분석, 업무 정의, 프로세스 재설계, 시스템 개발을 위한 화면 정의 등 신규 제도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업성 분석

2) 자료: 나라장터

- 발주기관: 과학기술인공제회
- 소요재정: 2023년 기준 55백만원

□ 추계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이 3년마다 우리사주제도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 4,500만원, 2032년 4,500만원 등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우리사주제도운영 실태조사 (안 제49조의3)	45	—	—	45	—	90	18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실제 실태조사의 내용·주기·방식 등에 따라 추계액은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go.kr